

[] 가축 사육제한
[]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서

제 호

가축사육시설		농장명					
		소재지					
소유자 (관리자)		성명			전화번호		
		주소					
가축 사육 제한 명령 []	내용	가축 사육제한 명령 이유					
		사육 규모			이행기간		
	대상 가축	축종	품종	성별	연령	특징	비고
가축 사육 시설 폐쇄 명령 []	내용 및 대상	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이유					
		농장명			소재지		
준수사항							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3조의4제5항, 제19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[]가축 사육제한을 []가축사육시설 폐쇄를 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-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-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 명령 또는 사육시설 폐쇄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